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96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0
1.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일반	10
2. 최근 4년간 사업타당성조사 수행현황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5. 2. 25.
3. 회부연월일: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방위사업은 그 특성상 최소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예산심의회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 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안보 등에 관한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생략) <u><신설></u>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등에 관한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다.</u>
<u>②</u> · <u>③</u> (생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④</u>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u>⑤</u> -----

현행	개정안
은 제3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항~~ ----- ----- ----- ----- --.
⑤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선정기준·조사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⑥ ----- ----- -----제4항----- ----- -----.

□ 현행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¹⁾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신규 전력지원체계사업, 무기체계 구매사업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1)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있으며, 실제로는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음.²⁾

그리고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선정기준·조사방법·절차 및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최근 연간 사업타당성조사 건수는 2022년 33건, 2023년 38건, 2024년 29건임.⁴⁾

□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최초총사업비⁵⁾가 확정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 및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

[사업타당성조사 수행기관별 주요업무]

대상기관	수행내용
방위사업청 (재정담당관)	「방위사업법」 제14조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지정된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5조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타당성조사를 요구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실시함.

3) [참조자료] 1.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일반 참조

4) [참조자료] 2. 최근 4년간 사업타당성조사 수행현황 참조

5)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4조(최초총사업비 협의 요청), 제25조(최초총사업비의 확정)

대상기관	수 행 내 용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5조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사업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제출
기획재정부 (방위사업 예산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
방위사업청 (재정담당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자에게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통보
수행기관 (KDA, KSI, KSI)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수행기관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통보받고 1개월 이내에 타당성조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며, 사업타당성조사는 8개월간 수행이 원칙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수행기관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방위사업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측면에서 타당함.

첫째, 일반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⁶⁾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⁷⁾ 또한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음.⁸⁾

[사업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비교]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 7)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목적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 유지·시설신규사업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대상 사업	대규모 방위력개선 신규사업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500억원 미만이라도 양산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도 대상사업으로 정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면제 요건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 해당 없음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조사 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개발연구원(KDI)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할 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 과기부(R&D 사업)

둘째, 개정안에서는 ‘국가안보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등에 관한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제출에 따른 방위사업의 보안성 노출 우려 및 국가안보 위협 등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음.⁹⁾

셋째, 최소 수천 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의 규모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있는 국회 논의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최근 4년간 방위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건수]

[단위 : 개(KIDA/KISTEP)]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건 수	5 ¹⁰⁾ (5 / 0)	29 (24 / 5)	38 (32 / 6)	33 (27 / 6)

*자료: 방위사업청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사 비밀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률로써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위사업의 특수성 및 국가안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9) 방위사업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국방 관련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각종 무기체계의 구체적인 사양, 기술 및 연구개발의 수준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결과보고서는 ‘군사 3급 비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방위사업청 의견)

10) 2025년 3월말 기준

필요가 있고,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 별도 제출하거나 대면설명
등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1.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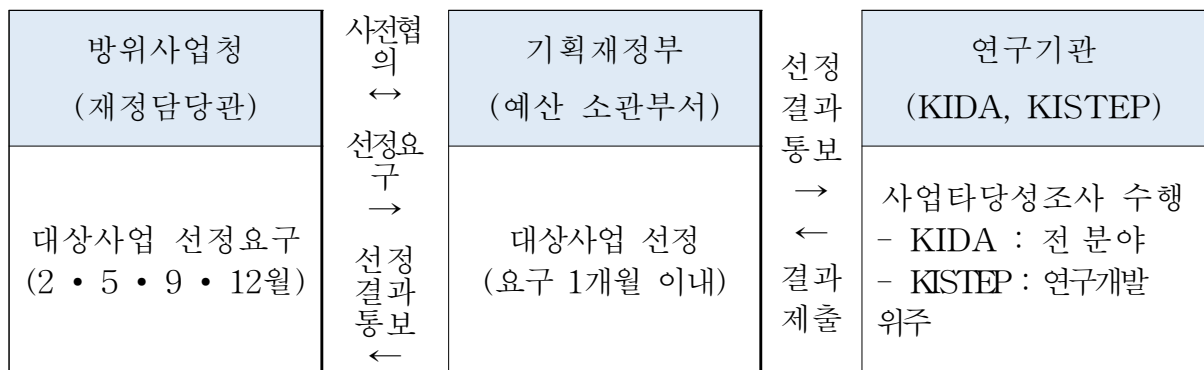
□ 목 적

대규모 방위력개선 신규사업에 대해 착수 이전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추정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연구개발(양산비용 포함), 구매사업, 시설사업, 정보화사업
- (대상사업 선정) 기획재정부(예산 소관부서)
- (대상사업 선정시기) 연 4회(2·5·9·12월) 정기사타 실시
 - * 다만,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에 사타 요구 가능
- (선정요건) 연구개발/구매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 * 위원회(분과위/방추위) 심의·조정을 완료한 사업

□ 사업타당성조사 사업수행체계도



□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 (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 연 평균 수행 실적(최근 3년) : 33건 (KIDA 27건 / KISTEP 6건)
- (소요기간) 8개월
- (분석중점) 소요의 적절성,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 (분석절차) 각 과제별 자료수집 및 착수 · 중간 · 최종토론회 실시

2. 최근 4년간 사업타당성조사 수행현황

□ 총 괄

[단위 : 개(KIDA/KISTEP)]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건 수	511) (5 / 0)	29 (24 / 5)	38 (32 / 6)	33 (27 / 6)

□ 2025년 수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조사 수행기간	결과	비고
1	군위성통신체계-Ⅲ	3,029,300	‘25. 3. ~ 10.	진행 중	KIDA
2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Ⅱ	102,765	‘25. 3. ~ 10.	진행 중	KIDA
3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	57,200	‘25. 3. ~ 10.	진행 중	KIDA
4	전자식다기능신관	163,342	‘25. 3. ~ 10.	진행 중	KIDA
5	잠수함구조함-Ⅱ Batch-Ⅱ	636,354	‘25. 3. ~ 10.	진행 중	KIDA

□ 2024년 수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수행기간	결과	비고
1	해양정보함-Ⅲ	1,580,000	‘24. 2. ~ ’25. 3.	진행 중	KIDA
2	지휘 헬기-Ⅱ	739,200	‘24. 2. ~ 8.	타당성 확보	KIDA

11) 2025년 3월말 기준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수행기간	결과	비고
3	해상작전헬기-Ⅱ	2,874,600	‘24. 2. ~ 10.	타당성 확보	KIDA
4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591,900	‘24. 2. ~ 10.	타당성 확보	KIDA
5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	76,700	‘24. 2. ~ 10.	타당성 확보	KISTE P
6	장애물개척전차(양산)	502,064	‘24. 2. ~ 10.	타당성 확보	KIDA
7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양산)	175,100	‘24. 2. ~ 10.	타당성 확보	KIDA
8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254,300	‘24. 2. ~ ’25. 7.	진행 중	KIDA
9	국방 미래기술 연구센터 건설	231,800	‘24. 2. ~ 10.	타당성 확보	KIDA
10	기동저지탄(R&D)	40,390	‘24. 5. ~ ’25. 9.	진행 중	KIDA
11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803,900	‘24. 5. ~ 11.	타당성 확보	KIDA
12	장거리공대공유도탄	1,574,300	‘24. 5. ~ 11.	타당성 확보	KISTE P
13	표적식별장비-Ⅱ	337,500	‘24. 5. ~ 11.	타당성 확보	KIDA
14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양산	4,275,800	‘24. 5.~’25. 2.	타당성 확보	KIDA
15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88,600	‘24. 10.~’25. 5.	진행 중	KIDA
16	AH-64E 성능개량	385,275	‘24. 10.~’25. 5.	진행 중	KIDA
17	L-SAM-Ⅱ(활공단계 요격유도탄)	786,200	‘24. 10.~’25. 5.	진행 중	KISTE P
18	중형전술차량	382,500	‘24. 10.~’25. 5.	진행 중	KIDA
19	탄도수정신관	835,100	‘24. 10. ~ ’25. 5.	진행 중	KISTE P
20	레이저대공무기 Block-I	360,240	‘24. 10. ~ ’25. 5.	진행 중	KIDA
21	K10탄약운반장갑차 경미한	95,500	‘24. 10. ~ ’25. 5.	진행 중	KIDA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수행기간	결과	비고
	성능개량				
22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 I-②(TMMR)	2,193,000	'24. 12. ~ '25. 7.	진행 중	KIDA
23	특수전지원함 Batch-I	307,686	'24. 12. ~ '25. 7.	진행 중	KIDA
24	특수침투정 Batch-I	48,945	'24. 12. ~ '25. 7.	진행 중	KIDA
25	장사정보요격체계(R&D)	823,443	'24. 12. ~ '25. 7.	진행 중	KIDA
26	수중자율기뢰탐색체	60,587	'24. 12. ~ '25. 7.	진행 중	KIDA
27	화생방보호의-II	928,885	'24. 12. ~ '25. 7.	진행 중	KIDA
28	공대함유도탄-II	564,100	'24. 12. ~ '25. 7.	진행 중	KIDA
29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453,500	'24. 12. ~ '25. 7.	진행 중	KISTE P

□ 2023년 수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조사 수행기간	결과	비고
1	이동형항공관제레이더 (R&D)	95,479	'23. 2. ~ 7.	타당성 미확보	KIDA
2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	125,000	'23. 2. ~ 10.	타당성 미확보	KIDA
3	155밀리 정밀유도포탄	99,744	'23. 2. ~ 8.	타당성 확보	KIDA
4	장갑형의무후송차량	22,700	'23. 2. ~ 8.	타당성 확보	KIDA
5	KDX-II 성능개량	745,985	'23. 2. ~ 8.	타당성 확보	KIDA
6	군수지원함(AOE-II) 2차	531,592	'23. 2. ~ 8.	타당성 확보	KIDA
7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724,800	'23. 2. ~ 7.	타당성 확보	KIDA
8	F-15K 성능개량	3,864,611	'23. 2. ~ 8.	타당성 확보	KIDA
9	공중급유기 2차	1,178,921	'23. 2. ~ 8.	타당성 확보	KIDA
10	스텔스 무인기체계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시범기 개발	195,295	'23. 2. ~ 10.	타당성 확보	KISTE P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조사 수행기간	결과	비고
11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 팬 엔진 개발	239,716	‘23. 2. ~ 10.	타당성 확보	KISTE P
12	복합형 회전익기 계통통합 및 기동제어 개발	55,000	‘23. 2. ~ 9.	타당성 미확보	KIDA
13	다기능관측경	94,992	‘23. 2. ~ 8.	타당성 확보	KIDA
14	230mm급무유도탄	585,815	‘23. 3. ~ 8.	타당성 확보	KIDA
15	전자전기(Block- I)	1,848,977	‘23. 4. ~ ‘24. 4.	타당성 확보	KISTE P
16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111,169	‘23. 4. ~ 11.	타당성 확보	KIDA
17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3,071,459	‘23. 4. ~ 10.	타당성 확보	KIDA
18	레이저대공무기(Block- I) 양 산	127,694	‘23. 4. ~ 10.	타당성 확보	KIDA
19	함대지탄도유도탄	701,148	‘23. 4. ~ 10.	타당성 확보	KISTE P
20	L-SAM-II(고고도요격유도 탄)	567,721	‘23. 4. ~ 10.	타당성 확보	KIDA
21	L-SAM-II(활공단계 요격유도 탄)	786,259	‘23. 4. ~ 10.	타당성 미확보	KIDA
22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M-SAM) Block-III	868,771	‘23. 4. ~ 10.	타당성 확보	KIDA
23	고속전투주정	114,009	‘23. 4. ~ 10.	타당성 확보	KIDA
24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1,950,839	‘23. 4. ~ 10.	타당성 확보	KIDA
25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4,275,800	‘23. 5. ~ 10.	타당성 확보	KIDA
26	155mm사거리연장탄	207,657	‘23. 9. ~ ‘24. 3.	타당성 확보	KIDA
27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102,100	‘23. 10. ~ ‘24. 6.	타당성 확보	KISTE P
28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250,200	‘23. 10. ~ ‘24. 4.	타당성 확보	KIDA
29	KSS-II 성능개량	798,700	‘23. 10. ~ ‘24. 6.	타당성 확보	KIDA
30	F-16C 수명연장	91,000	‘23. 10. ~ ‘24. 6.	타당성 확보	KIDA
31	IFPC 구현을 위한 고출력레 이저 기술개발	168,805	‘23. 10. ~ ‘24. 6.	타당성 미확보	KISTE P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조사 수행기간	결과	비고
32	목호항 해양무인체계 연구시설	133,650	‘23. 10. ~ ‘24. 6.	타당성 미확보	KIDA
33	K9A1차주포	443,400	‘23. 10. ~ ‘24. 6.	타당성 확보	KIDA
34	특수작전용기관단총	65,700	‘23. 10. ~ ‘24. 6.	타당성 확보	KIDA
35	K200계열장갑차 성능개량	129,300	‘23. 10. ~ ‘24. 6.	타당성 확보	KIDA
36	F-35A 성능개량	439,600	‘23. 10. ~ ‘24. 6.	타당성 확보	KIDA
37	장사거리시험장	173,800	‘23. 10. ~ ‘24. 9.	타당성 미확보	KIDA
38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1,432,495	‘23. 6. ~ ‘24. 2.	타당성 확보	KIDA

□ 2022년 수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조사 수행기간	결과	비고
1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2차(기술협력)	79,107	‘22. 1. ~ 8.	타당성 확보	KIDA
2	함탐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 인항공기(R&D)	146,767	‘22. 1. ~ 8.	타당성 확보	KISTE P
3	사이버전장관리체계(R&D)	126,500	‘22. 1. ~ 8.	타당성 확보	KIDA
4	한국형기동헬기(KUH-1) 성능개량형동력전달장치 개발 기술	186,803	‘22. 1. ~ 8.	타당성 확보	KIDA
5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	197,520	‘22. 1. ~ 8.	타당성 확보	KISTE P
6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II	6,512,700	‘22. 3. ~ 8.	타당성 확보	KIDA
7	울산급 Batch-IV	3,252,550	‘22. 3. ~ 8.	타당성 확보	KIDA
8	중고도정찰용무인기(MUAV)	470,536	‘22. 3. ~ 8.	타당성 확보	KIDA
9	정찰용무인수상정	41,964	‘22. 4. ~ 9.	타당성 확보	KIDA
10	40mm고속유탄기관총-II	251,828	‘22. 4. ~ 10.	타당성 확보	KISTE P
11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28,062	‘22. 4. ~ 10.	타당성 확보	KIDA
12	포투발살포식대인지뢰	192,297	‘22. 4. ~ 10.	타당성 확보	KISTE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조사 수행기간	결과	비고
					P
13	함대공유도탄-II	331,766	'22. 4. ~ 8.	타당성 확보	KIDA
14	철매-II 성능개량 2차	556,253	'22. 4. ~ 10.	타당성 확보	KIDA
15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461,977	'22. 4. ~ 10.	타당성 확보	KIDA
16	화생방보호의-II	498,800	'22. 4. ~ 12.	타당성 미확보	KIDA
17	K21보병전투차량 2차	788,042	'22. 4. ~ 10.	타당성 확보	KIDA
18	UH/HH-60 성능개량	899,838	'22. 4. ~ 11.	타당성 확보	KIDA
19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1,554,262	'22. 4. ~ 10.	타당성 확보	KISTE P
20	장거리함대공유도탄	383,365	'22. 4. ~ 10.	타당성 확보	KIDA
21	230mm급다련장	3,827,828	'22. 4. ~ 10.	타당성 확보	KIDA
22	K-9자주포 성능개량(K9A2)	49,432	'22. 7. ~ 12.	타당성 확보	KIDA
23	F-X 2차	3,752,553	'22. 7. ~ 10.	타당성 확보	KIDA
24	항공통제기 2차	3,097,523	'22. 7. ~ 11.	타당성 확보	KIDA
25	K-2전차	4,946,486	'22. 7. ~ '23. 1.	타당성 확보	KIDA
26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133,519	'22. 10. ~ '23. 7.	타당성 확보	KIDA
27	고속함(PKX-A) 성능개량	251,805	'22. 10. ~ '23. 7.	타당성 확보	KISTE P
28	AH-64E 성능개량	385,275	'22. 10. ~ '23. 6.	타당성 확보	KIDA
29	프로펠러추진 항공엔진 시 제개발 및 엔진품질인증실증기술	157,034	'22. 10. ~ '23. 7.	타당성 확보	KIDA
30	TICN Block-II	160,890	'22. 10. ~ '23. 6.	타당성 확보	KIDA
31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 (Link-22)	535,063	'22. 10. ~ '23. 8.	타당성 확보	KIDA
32	K56탄약운반장갑차	853,265	'22. 10. ~ '23. 4.	타당성 확보	KIDA
33	TICN Block I-②(TMMR)	1,834,585	'22. 11. ~ '23. 7.	타당성 확보	KIDA